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 등〉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08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 등	2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6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19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원인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또는 시행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미진했거나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성평가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변경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반영 의무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 참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175조).

Ⅲ. 검토의견

1.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가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하는 자를 현행 ‘근로자’에서 ‘근로자대표’로 변경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및 제175조제3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생략)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u>근로자</u> 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 ----- ----- <u>근로자대표</u>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u>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u>	1. <u>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u>

<u>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u> <u>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u> <u>한 자</u> <u><신 설></u>	<u>1의2.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u> <u>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u> <u>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u> <u>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u> <u>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u> <u>니한 자</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작업장의 구체적인 실정이 반영된 충실한 안전보건관리 수행을 도모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자를 현행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대표”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위험요인 파악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 발굴로 실효적인 산업재해 감소

대책 수립과 책임의식에 기반한 안전활동 문화 확산 등 당초 위험성 평가를 도입한 목적을 고려할 때, 의무참여자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서 근로자대표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누락 없이 반영되고 감소 대책이 수립·이행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평가를 위하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근로자의 참여는 유지하고,

근로자대표의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에 근로자대표도 함께 참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및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상향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3항제1의2호 및 제1의3호, 안 제175조제5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5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1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1. (생략)	1. (생략)
<신설>	1의2. (생략)
<신설>	1의3. 제49조제2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인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개정안은 과태료를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거나,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 보통의 사업장보다 현실적인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미준수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1)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의무인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²⁾ 그에 따른 절차적 요건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와 수립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고용노동부는 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절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은 제26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³⁾ 제44조제2항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시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할 때와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

2)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에 형평에 맞지 않고, 최근 5년간('20년~'24.11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한 554건 중 수립절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4건으로 0.7%에 그치는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례가 현장에 만연해 있지 않으므로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이 높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②안전보건개선계획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개정안은 현재 제24조제4항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이행과⁵⁾ 제75조 제6항 노사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이행의⁶⁾ 미준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개선계획 이행 미준수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최근 5년간('20년~'24.11월)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한 554건 중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건으로 0.4%에 그쳐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미준수 사례가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이 높은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6)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45